

전주지방법원 2015. 8. 28 선고 2015가단15964 판결 [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전북신용보증재단

피고1. A

2.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5. 8. 28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20,196,782원 및 그 중 20,196,704원에 대하여 2014. 9. 25.부터 2015. 6. 4.까지는 연 12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. 12. 3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2013. 12. 5. 접수 제279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용균

별지